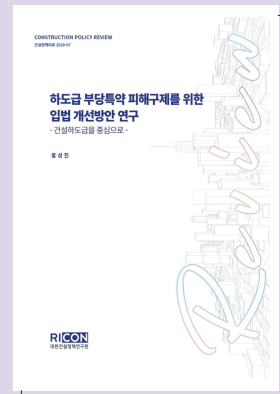


건설정책리뷰

하도급 부당특약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

홍성진_ 산업혁신연구실 책임연구원 (hongsj@ricon.re.kr)



우리 연구원은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를 위한 입법안 및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을 제시하는 ‘하도급 부당특약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 리뷰를 발간하였다.

2013년 이후 “하도급법”은 법률, 시행령, 부당특약 고시, 부당특약 심사지침 등 중층적 법규를 통하여 부당특약을 방지하고 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각서 등을 통하여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부당특약의 효력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당특약이 설정되어도 법원은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부당특약의 인정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 결국 계약 상대방은 부당특약에 따른 계약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불가능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한데, 이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상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

되어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에 동의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부당특약 금지에 따른 효력 여부를 입법의 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따라 비교형량할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도록 개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개선을 통하여 부당특약 여부를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계약 당사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에 따른 그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당특약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현행 “하도급법”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부당특약심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의 입법 개정안 및 “부당특약 심사지침”개정안을 통하여 부당특약의 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